



##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보고(알림)[신기술(주)]

### 1. 관련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
- 나. 「의료기기법」 제34조제1항
- 다. 「의료기기 회수·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」
- 라.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료기기센터 - 63호(2018.1.23.)

2. 대호 관련,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기술(주)의 생체검사용도구한벌(제인 04-661호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(알림)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<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>

품목명 (허가번호)	위해성 정도	사유
생체검사용도구한벌 (제인 04-661호)	「의료기기법시행규칙」 제52조제2항제3호 (위해성 3)	○ 수거·검사 부적합 의료기기 (자외선흡수스펙트럼 부적합)

끝.



